

지게차 사이드시프트 파손으로 적재물 낙하

지게차를 사용하여 알루미늄 제품이 적재된 파렛트랙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재자가 지게차로 들어 올려진 화물 아래에서 테이프 박스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포크연결부인 사이드시프트 축이 파손되면서 약 700kg의 제품파렛트랙이 낙하하여 피재자가 깔려 사망



발생 원인

- 지게차로 화물을 인양한 낙하위험구역에 근로자 진입
- 지게차의 노후화 및 보수점검 불량
 - 지게차 사이드시프트가 케리지로부터 이탈(파손)되면서 실린더의 축이 파단
 - ※ 사이드시프트(Side Shift) : 포크를 좌우로 이동(좌우 약 10cm 이동시켜 지게차 중앙에서 벗어난 파레트의 취급을 쉽게 해 주는 장치)
 - ※ 케리지(Carriage) : 사이드시프트를 마스트에 고정하는 수평 바(Bar)로 포크를 장착하는 부분

TIP

안전작업

- 1 위험구역 내 출입 금지**
 - 지게차의 포크로 화물을 상승시킨 상태에서는 하부공간에 출입금지
- 2 지게차 각부 보수점검 철저**
 - 지게차 하중 부과 부분에 대한 파손, 탈락 등에 대해 주기적 점검 실시
 - 운전 중 이상을 발생 시 정비 · 보수 후 사용



위험장소 출입금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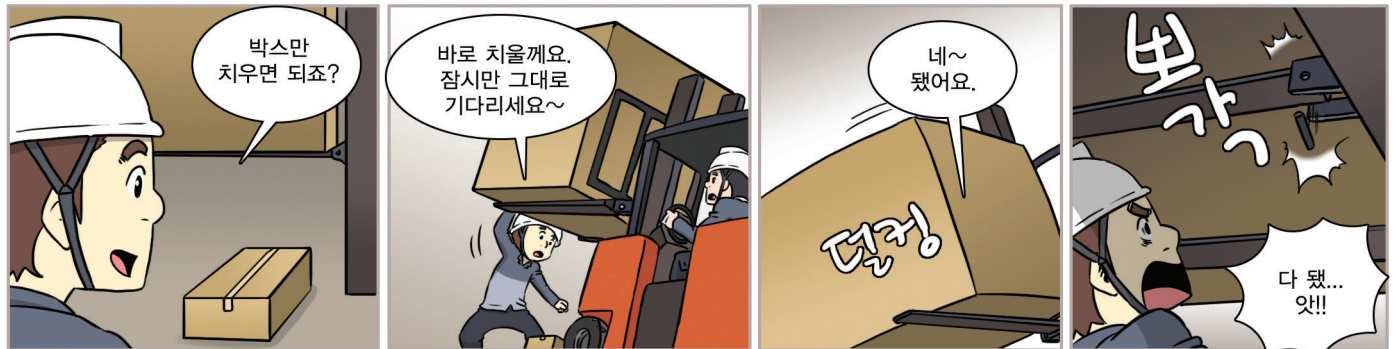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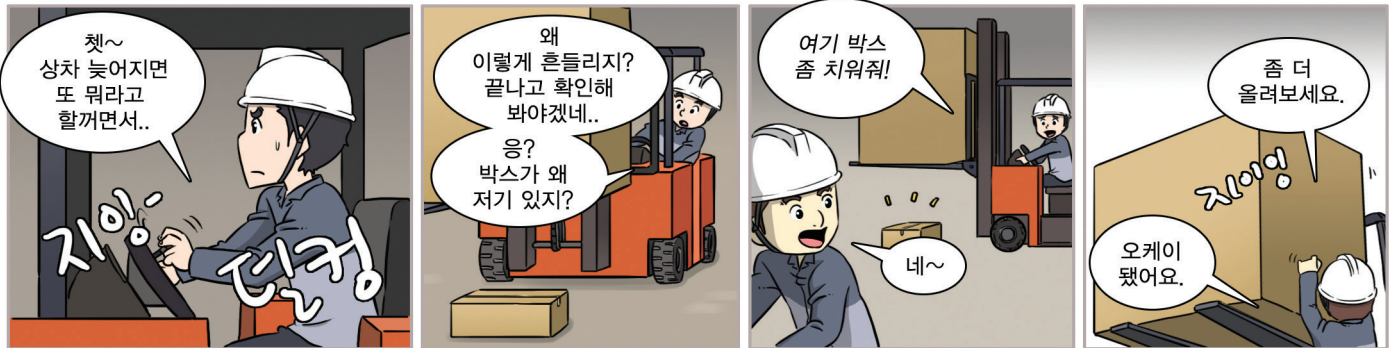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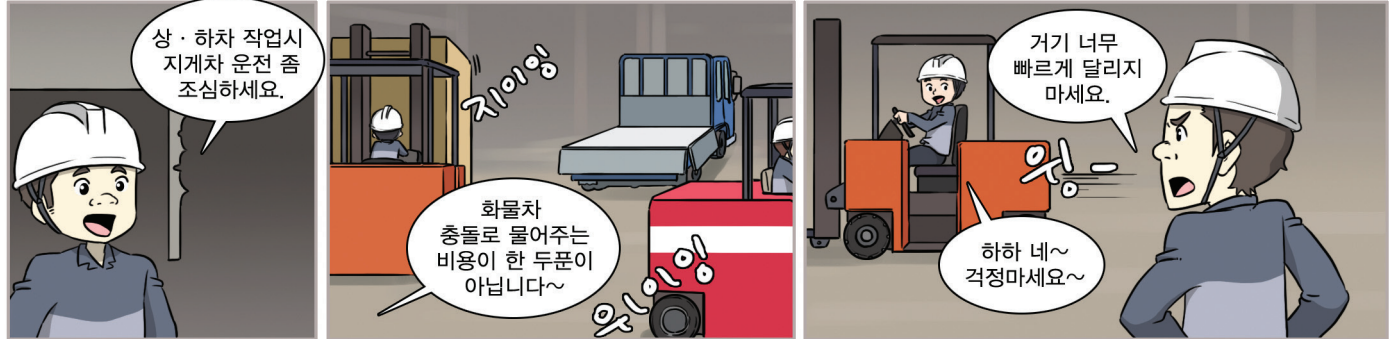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(출입의 금지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(작업지휘자의 지정) 등



지게차 사이드시프트 파손으로 적재물 낙하

낙하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하지 마세요!



설비는 이상 발견 시 즉시 이상에 대한 수리,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세요.
지게차 권상작업 중에는 화물의 하부 또는 포크의 하부에 출입을 금지하세요.

